



‘19년 한-몽골 반부패 MOU 이행 협력회의 출장 결과

2019. 6.



기 획 조 정 실
국제교류담당관실

목 차

I. 출장개요	1
---------------	---

II. 주요 활동결과

① 한-몽골 반부패 MOU 협력회의	2
---------------------------	---

② 한-몽골 반부패 세미나	6
----------------------	---

III. 평가 및 향후계획	36
----------------------	----

I 출장 개요

□ 개요

- 기간 · 장소 : '19. 5. 20(월)~24(금) 4박 5일/몽골 울란바토르
- 방문기관 : 몽골 부패방지청(IAAC) * IAAC :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
- 출장단 : 박계옥 기획조정실장, 운영국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장, 변규태 국제교류담당관실 주무관

□ 주요 활동

- **[5.21]** 한-몽골 반부패 MOU 협력회의
 - 몽골 부패방지 부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기관 간 MOU 이행 사항 점검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5.21~23]** 한-몽골 반부패 세미나
 - 양국의 반부패 전략 및 성과, 한국의 신고자 보호 및 청렴교육, 몽골의 청렴도 측정 도입 현황 등 주요 반부패 정책 공유

□ 출장 일정

일 자	시간	업무수행 내용
5.20(월)	19:05	○ 인천(19:05) → 울란바토르(21:45)
5.21(화)	09:00 ~ 10:00	○ 한-몽골 반부패 협력회의 - 부패방지부청장 면담 및 MOU 협력계획 논의
	10:00 ~ 12:00	○ 한-몽골 반부패 세미나 1. 몽골 국가 반부패 전략 및 계획(몽골) 2. 양국 반부패 정책 및 성과(권익위) 3. 질의응답
	14:00 ~ 17:00	4. 신고자 보호 제도 발표(권익위) 5. 질의응답
5.22(수)	10:00 ~ 12:00	6. 청렴연수원 기능 및 청렴교육 발표(권익위) 7. 질의응답
	14:00 ~ 17:00	8. 몽골 청렴도 측정 도입 현황(몽골) 9. 몽골 청렴도 측정에 대한 자문 및 한국 제도 현황 공유
5.23(목)	10:00 ~ 12:00	10. 부패예방 및 홍보활동(몽골) 11. 몽골 청렴교육에 대한 자문 및 한국 청렴교육 현황 공유
	14:00 ~ 17:00	12.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방지(몽골) 13. 몽골 재산신고 제도에 대한 자문 및 한국 재산신고 현황 공유
5.24(금)	08:40	· 울란바토르(08:40) → 인천(12:50)

II 주요 활동결과

1 한-몽골 반부패 MOU 협력회의

1. 몽골 부패방지부청장 면담

□ 일 시 : '19. 5. 21.(화) 09:10~10:00

□ 장 소 : 몽골 부패방지청 청사

□ 참석자

- (우리측) 기획조정실장,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장, 변규태 주무관
- (몽골측) 부패방지부청장, 예방홍보국장, 국제업무 담당자

□ 몽골 부패방지부청장 주요말씀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저희와 공유하기 위해 몽골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함
- 아시다시피 몽골 부패방지청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감사원, 선관위,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몽골 의회에 소속된 기관임
 - 몽골 부패방지청은 부패예방 인식제고 및 교육,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운영, 부패 원인 분석 관련 연구 기능 수행 등을 하고 있음
- '10년 MOU 체결 이후 양 기관은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우호협력을 증진시켜 왔음
 - 특히, 청렴도 측정의 경우 몽골에 매우 필요한 우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몽골에도 도입하였으며, 현재도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양 기관이 반부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정책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길 희망함

□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주요말씀

-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이 번 협력회의를 준비해 주신 부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방문은 반부패 MOU 이행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서로에게 도움이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
- 양 기관은 MOU를 체결한 이래 활발한 협력 활동을 추진해 왔음. 특히 청렴도 측정은 몽골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몽골의 청렴도 측정 현황에 대해 알고 싶음
- 권익위는 2013년부터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제가 몽골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몽골 부패방지청에서도 조사관을 추천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도 좋은 인재를 많이 추천해 주셔서 몽골의 반부패 역량이 강화되고 양 기관의 우호관계가 증진되길 희망함
- 지난해 저희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총회에서 아시아지역 이사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몽골 부패방지청이 적극 지지해 주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함
 - 국제무대에서도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음
 - 내년 6월 서울에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개최될 예정임. 부청장님께서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
- 우리 대표단을 환대해 주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한-몽골 반부패 MOU 협력 평가 및 향후 방안 논의

- 권익위와 몽골 부패방지청의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양 기관의 반부패 정책 및 경험의 교환
 - 반부패 경험 공유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표단 방문
 - 직원들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권익위와 몽골 부패방지청은 MOU를 체결한 이후 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계획대로 지속적인 직원 교류를 실시하여 양국의 반부패 정보를 공유하였음
 - 권익위를 통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 공유는 몽골의 반부패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였으며, 특히 청렴도 측정은 몽골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몽골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몽골 부패방지청 자료들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 양 기관 간 정책 자료를 교환하는 부분은 미흡한 상황임
- 권익위는 몽골 부패방지청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음
- 양 기관 간 향후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반부패 활동 공유
 -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보호 제도, 청탁금지법 등
 - 몽골 부패방지청의 세미나, 워크숍 개최 시 권익위의 전문가 지원
 - 양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에 적극 참여



<몽골 부패방지부청장 면담>



<몽골 부패방지청 견학>

1. 몽골 반부패 전략 및 계획 (IACC 예방홍보부)

- 2016년 11월에 몽골 국회에서 국가반부패 전략 및 계획을 승인함
- 국가반부패계획은 공직자 등 공공부문과 이해관계자, 지역관계자,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이 컨퍼런스, 세미나 등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수립하였음
- 국가반부패계획은 6년 계획으로 1단계 (2016-2019), 2단계 (2020-2023)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음
- 국가반부패계획의 목적은 공공기관, 시민사회, 정당 등과 협력하여 몽골의 부패를 감소시키고 사회 전반에 청렴성을 제고하여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책임 있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 국가반부패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정하고 책임 있는 투명한 공공서비스 실현
 - 공공서비스의 개방성을 위한 전자 정부 구축
 - 예산, 재무 및 감사 활동의 투명성 보장,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 조달분야 과정 개선을 통해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증대
 - 사법기관 및 법집행 기관의 공정성,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
 - 민간부문의 부패 감소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관협력 확대
 - 부패방지를 위해 국민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의 역할을 확대
 -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 국민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반부패·청렴교육 강화
 - 반부패기관과 및 국제기구와의 반부패 협력 증진

2.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성과 (권익위 박계옥 기획조정실장)

- 권익위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출범했음
 - 3개 위원회의 통합으로, 권익위는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을 단일한 창구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권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사무처는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기관은 서울종합민원사무소와 청렴연수원이 있고, 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약 500명임
- 권익위는 부패 예방과 사후 통제 기능을 수행함
 - 예방조치에는 청렴교육, 청렴도측정, 공직자행동강령, 부패영향평가가 있음
 - 사후 조치로는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있음
- 권익위는 공직자의 반부패 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렴연수원과 온라인을 통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16년부터는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권익위에서 각 기관의 청렴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각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 위원회는 2018년 청렴도측정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약 26만 명의 시민과 해당 기관의 공직자,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05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였음

- 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해 왔음
 - 청렴도 평가가 공공부문 내 부패 수준과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 라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한해 동안 시행한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임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정부가 수립한 반부패 정책을 개별 공공기관이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임
- 위원회는 2006년부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상에 내재한 부패위험 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고 있음
 - 모든 공공기관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반드시 권익위로부터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공직자가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누구든지 부패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패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사건을 이첩함
 -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할 의무가 있고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익위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권익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음
 - 신고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장하고, 신고로 인해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하며, 해고 등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있음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손실을 회복한 경우 최대 30억원(약 3백만 달러)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는 2015년 11월 UNODC가 발간한 “신고자 보호 우수사례에 대한 안내서”에 수록되어 있음
 - 또한, OECD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심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가 당사국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높이 평가하였음
- 한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
 -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 후, 사회각계에서 청탁·접대 관행과 온정주의 문화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도 청탁금지법을 반부패의 이정표로 언급하는 등 한국의 부패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와 같은 부패방지 노력에 힘입어 한국의 부패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7년도 세계부패바로미터에 따르면 한국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뇌물제공 경험이 3%를 기록하였음
 - 119개 조사 대상국의 평균적인 뇌물제공률이 약 25%로 조사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부패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보임

- 권익위가 발표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사회의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국민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정부의 다각적인 반부패 정책으로 사회전반에서 청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질의응답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성과]

<질의응답>

- **(몽골) 권익위는 소속과 구성은 어떠한지?**
- (권익위) 권익위는 조직체계상 국무총리 소속이나 법에 의해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위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음. 위원회 위원 중 3인은 입법부, 3인은 대법원에 의해 추천되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됨. 조직 구성은 앞서 설명했듯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처에는 기획조정실, 부패방지국, 고충처리국, 행정심판국, 권익개선정책국이 있고 소속기관으로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와 청렴연수원이 있음
- **(몽골) 권익위와 감사원, 검찰 및 경찰과의 관계는 어떤지?**
- (권익위) 감사원의 기본 업무는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이며, 위원회의 업무는 부패를 없애기 위한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감독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것임. 위원회가 접수한 부패신고 중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된 신고는 감사원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사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하는 등 협력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
- **(몽골) 권익위가 통합된 배경은 무엇인지?**
- (권익위) 위원회 통합 전에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기능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음. 이 기능들은 행정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부패방지도 결국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로부터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접수창구의 분산 및 각 창구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웠음.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구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한 곳으로 통합하게 되었음. 그 결과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한 곳에서 접수·처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몽골) 권익위는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 (권익위)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패신고 대표전화, 홈페이지, 위원회 방문 등을 통해 사건을 신고할 수 있음. 접수된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수된 신고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기관에 이첩함. 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은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조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몽골) 권익위는 재산등록 업무도 수행하는지?**

○ (권익위) 권익위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하지 않음. 한국의 경우 공무원 채용, 복무, 윤리 등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몽골) 권익개선정책국의 역할은 무엇인지?**

○ (권익위)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과 정책에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발견하여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는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음

○ **(몽골) 권익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은 무엇인지?**

○ (권익위) 권익위는 올해 채용비리·갑질 등 국민들의 일상 속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이를 위해 우선, 발전한 국민 의식수준과 기대에 못 미치는 부조리·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서서 '국민 생활 속 적폐 청산'을 중점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 성과를 창출할 계획임. 먼저,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기관의 전년도 채용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있음. 채용비리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즉시채용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임. 다음으로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청탁·갑질행위를 근절할 계획임. 합법을 가장한 인사청탁, 후원·협찬 요구 등 갑질행위와 금품수수 등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조례·사규 등을 정비해나갈 것임. 특히,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한 갑질 피해자 전용 익명상담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그리고 갑질 신고자에 대해 부패사건에 준하는 신분비밀 보장을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공직자의 사익 추구로 인한 공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하려고 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예방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깨끗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패 개선에도 중점을 둘 것임. 이를 위해 국가의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가치 '국가청렴지수'를 만들 계획임. 우선 제조, 건설, 금융·보험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임. 기존의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부패 수준을 파악하기 힘들었음.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 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하는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려웠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국가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해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OECD, G20 등 국제반부패 라운드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 향후 권익위가 추진한 계획에 대한 성과와 국가청렴지수에 대해서도 몽골 부패방지청에 소개해 드리겠음.

4. 신고자 보호 제도 (권익위 운영국 과장)

- 한국에서 체계적인 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2년 시행된 「부패방지법」에서부터임
-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 그동안 신고자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분야의 신고자까지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개정됨
- 먼저, '14년 1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 등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 '16년 1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기존 180개였던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279개로 늘어났으며,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또한, 보상금은 내부신고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부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권익위가 재조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됨
- '18년 5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불이익조치로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 '18년 10월 개정된 법률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입함
 -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가 자료제출과

조사를 참여할 수 있음

-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첫째, 신고자 비밀보장으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및 보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권익위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임
- 둘째, 신변보호로,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익위에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셋째, 신고자 신분보장으로,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 넷째, 책임감면 제도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신고자 보호의 방법으로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가 있음
-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부패신고와 공익신고가 동일하게 30억 원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함
-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모두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없더라도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함
- 신고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치료비 등 피해비용에 대해서는 구조금을 지급함

5. 질의응답 (신고자보호)

- **(몽골)** 신고자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보상은 신고 초기에 지원되는지, 아니면 최종 판결이 난 후 보상되는지?
- (권익위) 부패혐의 사실이 증명되어 재판을 받고 부패로 인한 수익을 환수 했을 때 보상하고 있음. 재판이 확정된 후에 보상금이 지급됨
- **(몽골)** 신고는 소속기관에 하는지 아니면 권익위에 하는지?
- (권익위) 부패신고는 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감사기관,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음.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입법부 등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 다만, 신고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익위에 신고해야함
- **(몽골)** 보상금 제도가 신고유도에 실제로 기여한다고 보는지?
- (권익위) 용기를 내어 신고한 이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신고유도에 기여하고 있음. 특히, 중대한 부패나 공익침해를 신고하는 내부고발자들은 신고 이후에 이직이나 퇴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어려움을 보상금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음
- **(몽골)** 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지?
-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동의 없이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권익위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불이익조치 취소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를 한 자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보호조치결정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음
- **(몽골)** 신고자 보상금 지급액 결정 기준과 예산의 출처는?
- (권익위) 보상금은 권익위 예산에서 지급되며,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4%~30%를 지급함

6. 청렴연수원 및 청렴교육 (권익위 청렴연수원 운영국 과장)

- 청렴연수원은 국내 유일한 청렴전문 교육기관으로 2012년 10월 개원하였고, 공무원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음
- 연수원은 2과 1TF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4명임. 예산은 17억 원으로 강사료와 시설운영비, 콘텐츠 개발비 등으로 활용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한국의 모든 공직자는 1년에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방법은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신규 임용자나 승진한 공직자는 반드시 대면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대상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이며, 장관이나 기관장 등 고위직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교육내용은 반부패 관련 다양한 법 제도와 정책, 청렴 우수기관의 사례, 문화 역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교육하고 있음
- 권익위는 청렴교육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고위직을 비롯한 핵심 인력을 교육하고, 각급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음
- 집합교육 과정은 기관대상 교육, 테마별 교육, 외국 공직자·사립 학교 교직원·언론인 과정 등 기타 교육과정으로 구분됨
- 기관대상 청렴교육은 두 가지로 구분됨
 - 첫 번째, 연수원 방문교육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주요 간부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연수원에 방문하여 청렴 콘서트와 특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임

- 두 번째, 찾아가는 청렴콘서트는 2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청렴교육으로, 현장근무 직군과 각급 교육훈련 기관 등으로 찾아가 청렴콘서트를 운영하고 있음
- 테마별 집합과정은 공직자들이 교육을 신청하여 연수원을 찾아오는 과정임
 - 첫째,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리더십함양과정과 승진자, 신규자, 부패취약분야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
 - 둘째,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및 교원대상 과정임
 - 마지막으로 어린이 대상 청렴인형극, 초중고 학생대상 다양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사이버교육 올해 총 12개 과목, 17만 명을 수강하는 것을 목표로 청탁 금지법의 이해,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내용을 운영하고 있음
- 청렴콘서트는 청렴교육을 상황극, 판소리, 뮤지컬 등과 접목한 것으로 연수원 직원들이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성, 출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교육으로 만족도가 높음

7. 질의응답 [청렴교육]

- (몽골) 강의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권익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점수는 평균 90점 이상으로 높은 편임. 이후 현업적용도 평가를 통하여 교육내용을 일상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몽골) 강사료는 누가 지급하는지?
- (권익위) 권익위 직원이 요청기관에 가서 청렴강의를 하면 강의료를 받지 않지만, 민간인 강사가 강의 시에는 권익위내 강사들에 대한 수당 기준을 참고하여 요청기관에서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음

○ **(몽골) 강사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 (권익위) 공직자, 공직퇴직자, 민간인 등 다양함. 다만, 공직 경험이 없는 분들은 청렴교육 강사 양성과정 이수에 어려움이 있어 합격률이 낮음

○ **(몽골) 청렴교육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지?**

○ (권익위) 권익위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한 청렴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공유하는 공모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음. 2018년 공모전의 경우 수기, 단편소설, 영상물, 독후감 등 5개분야 총 1,645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수기 16편, 단편소설 7편, 영상물 9편, 강의·강연 14편 그리고 독후감 13편 등 총 5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됨. 올해는 스토리텔링 부문을 신설해 본인 또는 주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반부패·청렴과 관련된 느낌 및 소회와 관련한 이야기,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청렴·공정에 대한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연 또는 토크쇼 형식으로 영상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임. 권익위는 접수된 작품들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대상 2편, 최우수상 2편 등 총 28편의 작품을 선정하고 12월에 시상할 예정임. 또한 우수작에 대해서는 내년 6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국제반부패회의(IACC) 등 각종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줄 계획임

○ **(몽골)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상금도 있는지?**

○ (권익위) 수상작들에 대해서 권익위원장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018년의 경우 반부패 청렴수기 총 16편에 대해 5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단편소설 수상작에 대해서는 총 7편 850만원을, 영상물 수상작은 총 6편 2,600만원을 지급하였음.

○ **(몽골) 사이버 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목은 무엇인지?**

○ (권익위) 1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음. 각 지역 청렴사적지와 역사 속 일화를 현대적으로 구성한 '역사 속에서 찾은 청렴이야기', 공익신고자 인터뷰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반부패 주요 법·제도인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 강령,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강의 등이 있음

8. 청렴도 측정 등 연구 분석활동 (IAAC 조사연구과장)

- 조사연구과는 법학, 경제학, 사회학, 통계학을 전공한 부서장 1명, 부서원 3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됨
- 권익위 청렴도 측정 제도를 참고하여 자체 모델을 개발, 2010년 2,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기 시작하여 격년에 한 번씩 청렴도를 측정하였음
 - ※ 몽골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청의 기능으로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 청렴도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알린다고 규정됨
- 2015년 다른 평가와 통합하여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매년 청렴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몽골 청렴도 측정 모형>



- 2018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2개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였음
 - 설문조사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7,260명의 국민들,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1,356명의 소속 직원, 795명의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대면으로 실시함
 - 설문조사에 약 25,000 달러 비용이 소요되었음
 - 측정 결과 문화 분야 기관들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토지관련 부서 및 법 집행기관들은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냄
 - 몽골 정부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하는데, 청렴도 측정 결과가 이 평가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그래서 정부 기관들이 청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 몽골 부패방지청은 청렴도 측정 등 연구 분석 활동 결과를 인쇄물로 발간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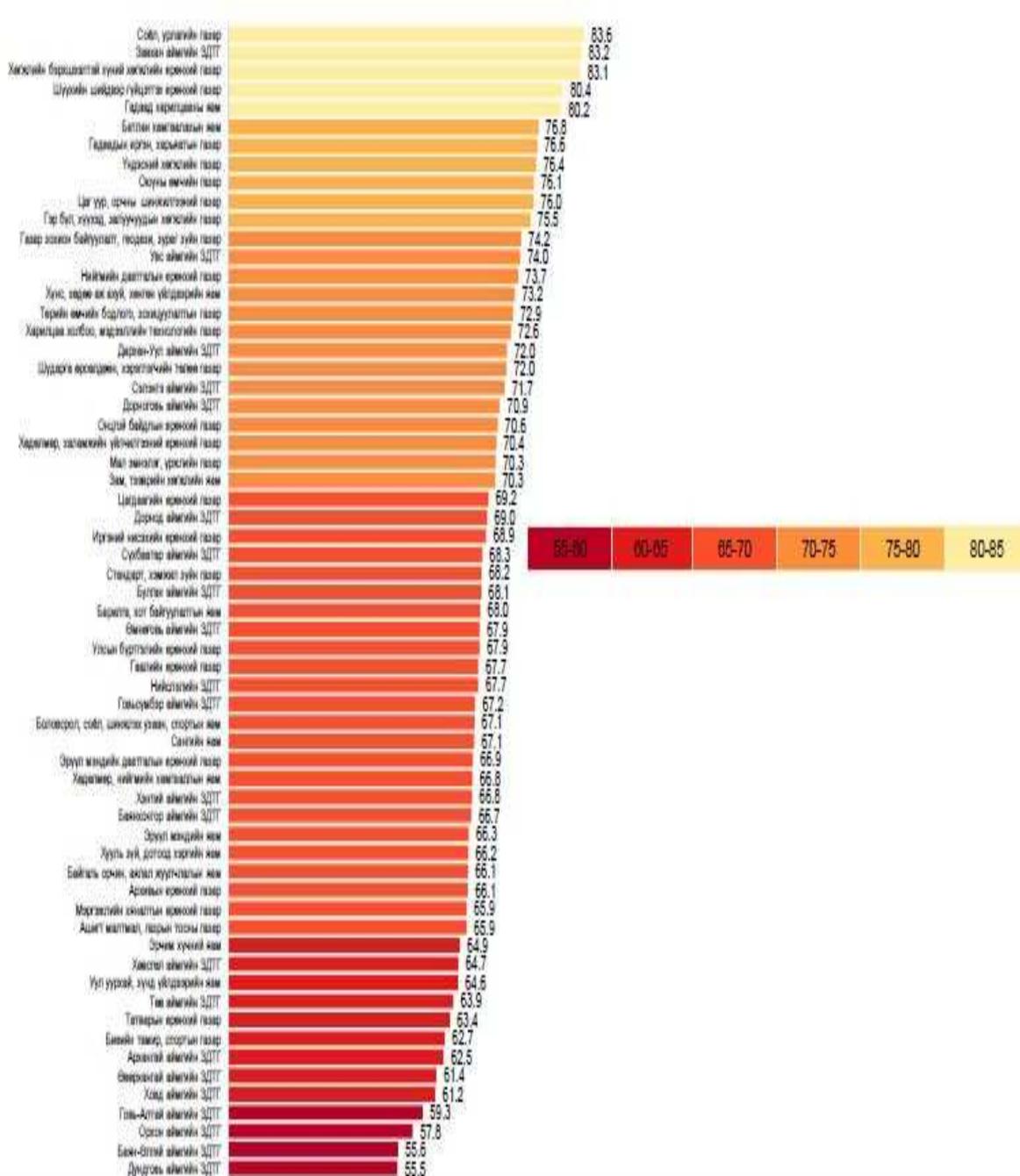


<몽골 청렴도 측정 결과>

연도	2010	2012	2014	2015	2016	2018
종합청렴도	2.77	3.38	3.43	73.8	69.7	68.7

※ 2010~2014(5점 만점), 2015~2018(100점 만점)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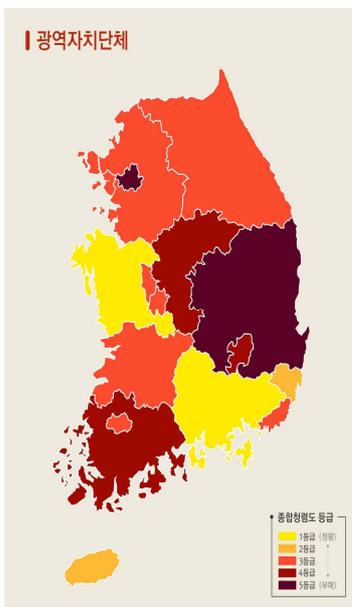


9. 몽골 청렴도 측정에 대한 자문 및 한국 제도 현황 공유

- (권익위) 권익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 청렴도를 산정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18.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온라인, 전화 조사를 하였음. 그 결과 약 70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2017년 보다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음. 권익위는 측정결과를 반영한 공공기관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공공기관 청렴지도란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청렴도 등급에 따라 색깔을 지도나 도표 등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음.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 타당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측정 대상기관 및 업무 선정, 측정모형을 개선할 계획임

< 청렴지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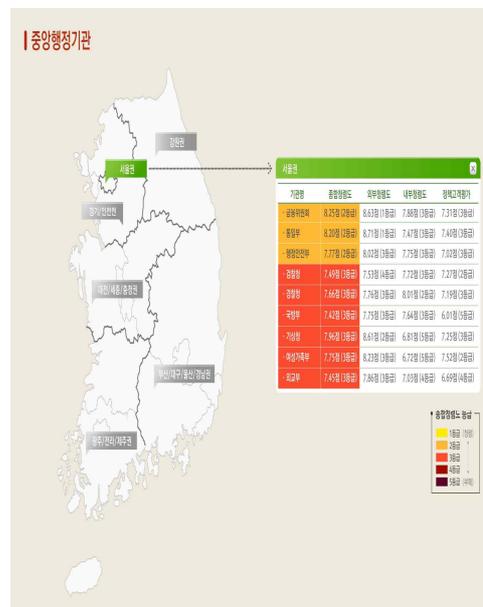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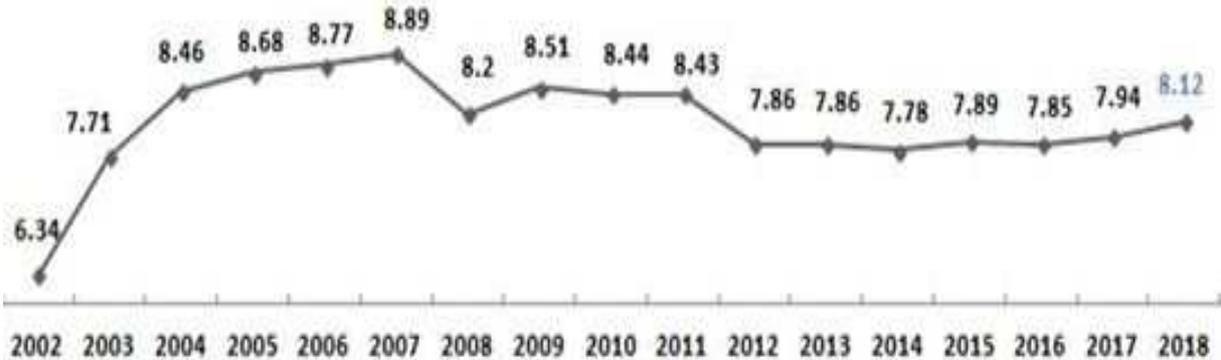
< 기초자치단체 >



< 중앙행정기관 >



< 한국의 청렴도 경향 >



○ (권익위) 몽골에서 청렴도 측정 시 어려운 점은?

○ (몽골) 청렴도 측정 결과가 안 좋은 기관에서는 청렴도가 낮은 이유를 청렴도 담당자 책임으로 생각함. 그래서 최근 부패방지법에 청렴도 측정은 개인 담당자가 아니라 기관이 받는다고 명시함. 또한, 모든 기관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싶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

○ (권익위) 설문조사는 직접 하는지 아니면 외부 위탁방식으로 하는지?

○ (몽골) 2015년 전까지는 직접 하였지만, 현재는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음

○ (권익위) 권익위는 26만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됨. 설문 대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측정 결과치의 정확성이 높아져 가급적 많은 비용을 들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게 좋은데,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 하는 한계는 있음. 한국은 설문문항 선정 등 설문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담당하고, 조사 자체만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음. 몽골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여 청렴도를 측정하길 바람. 설문조사 자체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권익위)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체 민원인 중에 무작위로 선정하는지,

아니면 기관 대표업무의 서비스를 받은 자 중에 선정하는지?

- (몽골) 설문조사 직원이 행정기관 앞에서 태블릿을 활용하여 민원인을 대면으로 조사함. 한국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1년 동안 행정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만 몽골은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행정서비스를 받은 자를 출구조사 방식으로 설문하고 있음
- (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청렴도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고,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시책평가가 몽골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 (몽골) 한국으로부터 소개는 받았지만,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음. 현재 몽골에 어떻게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부패방지 시책평가 영문 매뉴얼을 보내주었으면 함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청렴도 측정과 수레 양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효과가 있음. 한국에서도 두 평가 결과 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남. 대체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상승한 기관은 청렴도 측정 결과도 상승하였음.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한다면 2~3년 후에 청렴도 측정 결과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임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같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강력한 지지 속에서 추진해야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음. 이 제도는 기관을 평가 하는 것이므로 시행 초기에 대상기관들이 평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수도 대상기관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몽골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음
- (몽골) 설문조사 시 정직한 응답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 (권익위) 설문조사에 참여한 민원인에게 답변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을 인식시키고, 실제로 이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함. 또한, 법에 따라 설문조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됨을 설문지에 명시함

- **(몽골) 청렴도 측정 결과를 예산편성이나 다른 평가에 반영하는지?**
-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고 있음
- **(몽골)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공기관은 없는지?**
- (권익위) 청렴도 점수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측정 대상 업무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내부 직원의 불만이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평가방법 및 설문 항목을 수정·보완하고 청렴도 점수 산출 시 철저한 데이터 검증을 하고 있음

10. 부패예방 및 홍보 활동 (IAAC 예방홍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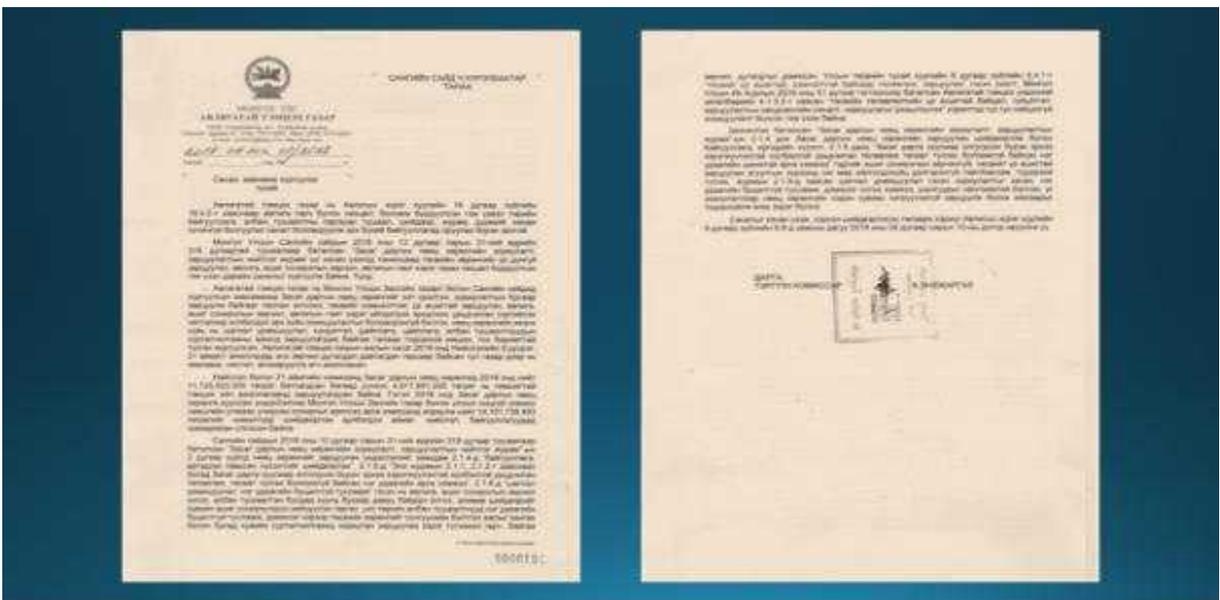
- 예방홍보국에는 조사연구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장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직원으로 구성됨
- 예방홍보국은 몽골의 부패 현황을 파악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국민들에게 부패의 피해에 대해 교육하여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부패방지청에서는 청사 강당에서 1주일에 한번 100~200명 정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17년도에는 11,345명의 공무원이 청렴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총 21,075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음
 - 또한, 병원, 공항 등 타 기관에서 반부패·청렴 교육을 요청 시 해당 기관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많은 몽골인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사용하고 있어 부패방지청에서도 SNS를 통한 청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부패방지청은 국가기관이 지시서와 같은 행정규칙을 발행할 때 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으면 그 행정규칙을 무효화하고 있음
- 부패방지청은 각 기관이 행정규칙을 만들 때부터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하였음



11. 몽골 청렴교육에 대한 자문 및 한국 청렴교육 현황 공유

- (권익위) 민간분야에 대해서도 청렴교육을 실시하는지?
- (몽골) 예전에는 국민들 대상으로도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우선 1차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음.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일정부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 국민들 대상으로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음
- (권익위) 일반 국민 대상 청렴교육은 필요하지만 예산이나 인원의 제약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또는 유명인들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면서 강의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추진하고 있음
- (몽골) 몽골도 가수와 같은 연예인이 강의를 해왔는데 만족도는 높지 않았음
- (권익위) 몽골은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 (몽골) 몽골 공무원은 약 19만 명이며 이 중 재산신고를 하는 6급 이상 공무원들은 약 4만 명 정도임.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있으며, 연말에 교육계획 및 신청 방법을 통보하면 대상자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있음. 신청자 중 신규 공무원, 고위 공무원 등으로 분류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권익위) 권익위도 테마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승진자, 신규자, 고위직 과정이 있으며, 최근에는 각 기관 감사청렴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 후 각 기관으로 가서 청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부패취약 분야 담당자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권익위) 몽골은 온라인 교육을 하는지?
- (몽골) 아직 온라인 강의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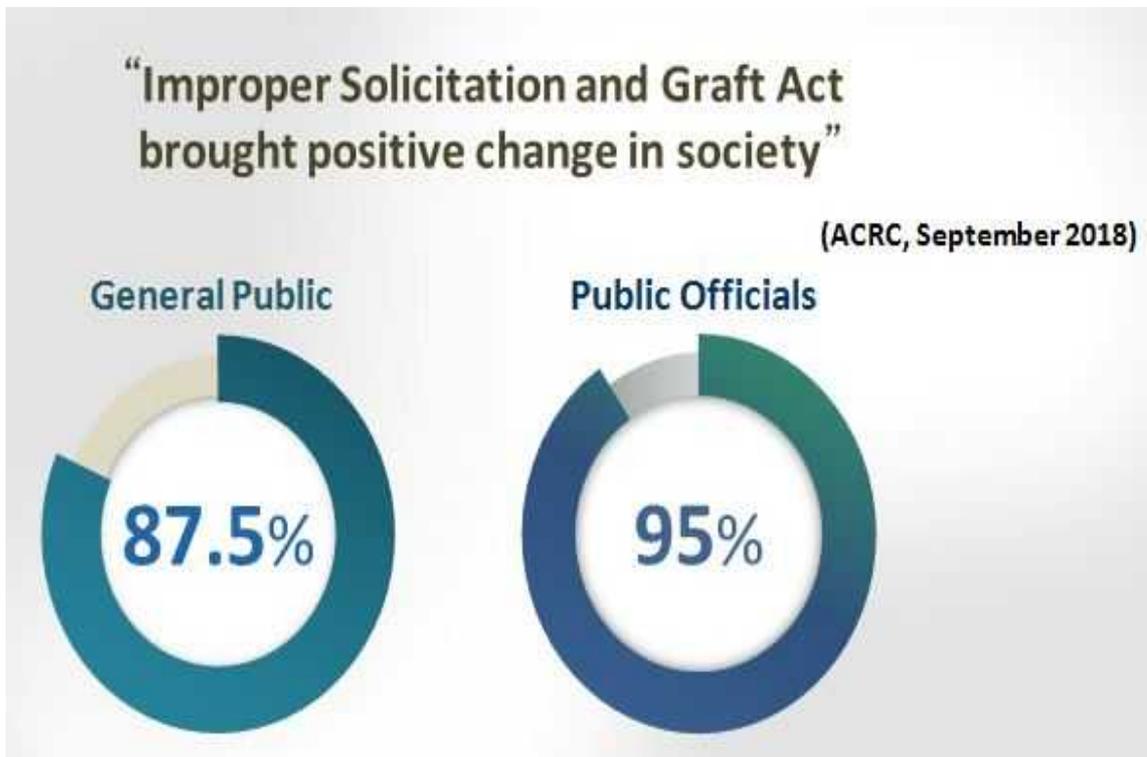
○ (권익위) 한국은 교육 대상이 160만 명이어서 물리적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음. 첫 번째는 각 기관으로 가서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임. 올해 사이버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있음. 진도율이 80%이상 되어야 하며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되어야 수료가 됨. 학습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음.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 회원등록 → 수강 신청 → 교육승인 → 과정학습 → 교육수료 → 기관통보 절차로 운영됨. 그리고 청렴교육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과정, 역량향상과정, 전문 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함. 각 기관에서는 필요한 강사를 섭외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청렴교육 강사는 대부분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임. 청렴교육 강사는 교육내용 및 외부강의 출강 여부에 따라 기본강사, 소양강사, 전문 강사로 구분됨. 기본강사는 소속된 기관 및 단체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이고, 소양강사는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전문 강사는 반부패 법령 및 제도·소양 등 청렴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말함

<사이버 교육>



- **(몽골) 연수원에 청렴교육 강사로 등록되지 않은 강사는 외부에 청렴 강의를 할 수 없는지?**
- (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운영 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렴교육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렴교육 강사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외부에 청렴강의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몽골) 연수원에서 청렴교육 강사를 추천하거나 중개해 줄 수 있는지?**
- (권익위) 연수원은 우수한 청렴교육 강사의 인력풀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천이나 중개는 일부 강사에 대한 특혜로 오인될 수 있어서 하지 않음. 향후 전문 강사의 경우 강의실적과 만족도를 공개하여 공공기관에서 우수한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임
- (몽골) 몽골도 아이막(지방정부)에 청렴교육을 할 강사를 준비하고 있음. 권익위에서 말한 내용이 저희가 준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음
- **(몽골) 청렴한 사회가 되려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함. 아시아인들 특징이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몽골에서도 의사 또는 선생님께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 (권익위) 한국도 예전에는 몽골과 마찬가지로 선물을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가 많았음. 그러나 이러한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이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었음. 또한 공직자 등이 거액의 금품이나 접대향응을 받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음.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실망과 함께 불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청탁 행위와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에 대한 제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향상과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현재 국민들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12. 재산신고 및 이해충돌 (IAAC 재산심사국 과정)

- 재산심사국은 재산신고분석과와 재산심사과로 나누어져있으며, 총 21명의 부서원으로 구성됨
- UN반부패협약의 의무 이행, 공직사회의 청렴성·책임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몽골은 2007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2013년부터는 온라인으로 공직자가 본인재산 뿐 아니라 가족 재산까지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고 있음

ХАСХОМ-ийг цахимаар мэдүүлэх

ХУВИЙН АШИГ СӨНИРХЛЫН МЭДҮҮЛЭГ БОЛОН ХӨРВӨНГӨ, ОРЛОГЫН МЭДҮҮЛГИЙН БҮРДҮҮЛЭЛТИЙН СИСТЕМ

Мэдээлэл Нэр ХАСХОМ ХАХУМ ХАСХОМ-гажигч ИРАТ Тусламж

Өөрийн ХАСХОМ жагсаалт

Сү	Байгуулга	Ажлын тусал	Мэдүүлсэн өдөр	Баталгаажуулсан өдөр	Төлөө	Тайлбар
1	2013	Ажлын тусал	2014-04-21	2014-05-06 00:00	✓	→
2	2014	Ажлын тусал	2015-01-06	2015-02-19 00:00	✓	→
3	2015	Ажлын тусал	2016-01-05	2016-02-14 00:00	✓	→
4	2016	Ажлын тусал	2017-01-05		✗	→ ↺

Өөрийн ХАХУМ жагсаалт

Байгуулга	Ажлын тусал	Мэдүүлсэн өдөр	Төлөө	Баталгаажуулсан өдөр	Тайлбар
Хясаалт өгөхөд байна					

> Өөрийн ХАСХОМ жагсаалт:

Мэдүүлэг гаргагчийн ХАСХОМ системд гаргаж байсан мэдүүлгийн жагсаалтыг харуулна

<몽골 온라인 재산등록>

- 현재 19만 명의 몽골 공무원 중 약 4만 명의 재산을 등록하고 있으며, 등록된 재산 내역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 재산 등록 대상자는 고위직 공무원 및 인·허가 공무원 등이며, 공직에 취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고, 매년

- 2월 15일과 재산상 큰 변동이 있을 때 재산변동 신고서를 제출함
- 국민들은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민원도 제기할 수 있음
 - 2018년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672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음
 - 재산신고 심사는 대통령 · 국회의원 · 국무총리 ·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부패방지청, 기타 공직자는 소관 위원회 및 해당 기관에서 수행함
 - 재산신고 심사 결과 신고 지연, 허위 정보 기재, 신고 거부에 대해 경고, 감봉, 강등,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 다만, 재산 관련 정보가 기관 간 공유되지 않아 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류로 제출 받다보니 심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УИХ-ын Хууль зүйн байнгын хорооны
2012 оны 05-р тогтоолын 2-р хавсралт

**АЛБАН ТУШААЛТНЫ 2017 ОНЫ ХУВИЙН АШИГ СОНИРХЛЫН МЭДҮҮЛЭГ БОЛОН
ХӨРӨНГӨ, ОРЛОГЫН МЭДҮҮЛЭГ**

Нэг. Мэдүүлэг гаргагч, түүний гэр бүлийн байдал:

1.1. Мэдүүлэг гаргагч	
Ургийн овог: Боржигон	Эцэг/эхийн нэр: Дорж
Регистрийн дугаар: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ийн дугаар:
A Ю 7 1 1 1 1 6 7 0	
Оршин суугаа газрын хаяг: БГД, 5 дугаар хороо, 10 дугаар хороолол, 9А байрны 251 тоот	Гар утас: 9999-9999 Ажлын утас: 7011-2468 Гэрийн утас: 7011-2469
Боловсрол, мэргэжил: Дээд, эрх зүйч	Цахим шуудангийн хаяг: Bayar_99@gmail.com
Төрсөн газар: Архангай, Эрдэнэбулган сум, эмнэлэг	Байгууллагын нэр: Байгаль орчин, ногоон хөгжлийн яам
Үндсэн харьяа: Улаанбаатар хот, Баянгол дүүрэг	Газар, хэлтэс, тасаг, алба: Төрийн захиргаа, удирдлагын газар
Сүүлийн хоёр жил ажилласан байгууллага, албан тушаал:	Албан тушаал: Ахлах мэргэжилтэн
Авто замын газрын Төрийн захиргаа удирдлагын хэлтсийн мэргэжилтэн	
Мэдүүлэг гаргах үндэслэл: <input checked="" type="checkbox"/> тэмдэглэгээ хийнэ.	Тухайн албан тушаалд томилогдсон, сонгогдсон огноо:
Шинээр томилогдсон, Сонгогдсон	2017 он 05 сар 15 өдөр
Шинэчлэн гаргасан	
Их хэмжээний өөрчлөлт	

<재산등록 양식>

13. 몽골 재산신고 제도에 대한 자문 및 한국 재산신고 현황 공유

- (권익위) 약 4만 명의 공무원이 재산등록을 한다고 하였는데 4만 명 모두 재산을 공개하는지, 아니면 공개하는 기준이 있는지?
- (몽골) 약 4만 명 중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 작년의 경우 공직자 약 3만 6천여 명의 재산을 공개함
- (권익위) 재산등록 한 공직자 4만 명 중 3백여 명을 선별하여 정밀 검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300명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는지?
- (몽골) 국민들이 재산신고서를 보고 민원을 제기한 자료를 바탕으로 300여명을 선별하여 등록된 재산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음
- (권익위) 권익위는 재산등록, 공개,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음. 한국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인사혁신처라는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한국의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재산등록 의무자는 대통령, 장차관, 4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경찰, 소방, 감사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임. 이 중 대통령, 장차관, 1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등 고위공무원은 신고한 재산을 공개하고 있음. 재산등록 시기는 최초등록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고, 정기적으로 전년도 재산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함. 재산공개 시기는 등록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이며, 공직자의 재산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함. 한국의 인사혁신처에서는 재산을 심사하는데 심사대상은 국가

지방 정무직, 1급 공무원 등 공개자 전원을 심사하며, 공개자를 제외한 등록의무자는 기준에 따라 선별 심사함. 심사내용은 등록재산의 거짓 기재 등 재산 성실등록 여부와 재산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함. 재산심사 결과 재산을 거짓 등록 등을 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함. 재산심사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음. 재산등록 → 심사자료 확보 →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 심사 → 사실 확인 및 소명요구 → 공직자윤리위원회 상정 → 윤리위원회 의결 → 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 보완신고서 작성·제출 과정으로 업무를 처리함

- 한국에서는 시스템 간 정보가 공유되지만, 몽골에서는 서류로 관련 정보를 제출받기 때문에 재산을 검증하고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재산등록 관련 업무도 한국과 몽골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협조요청 및 연락 정보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음

III 평가 및 향후계획

□ 한-몽골 반부패 기술지원 확대

- 몽골의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패가 심화되지 않도록 몽골의 반부패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몽골은 정부의 반부패 의지, 반부패 전담기구의 권한, 친한(親韓) 분위기 등 우리 반부패 정책 전수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
 - 위원회의 주요 제도인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고자 보호와 최근 제정된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을 순차적으로 전수
 - 기 전수된 청렴도 측정이 향후에도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문 등 컨설팅 지원
- 또한, 몽골 부패방지청 직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몽골 측 협조사항 후속조치 이행

- 몽골 부패방지청에서 부패방지 시책평가 영문 매뉴얼 및 한국의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업무 담당부처 정보 요청
 - 부패방지 시책평가 매뉴얼 뿐 아니라 위원회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번역한 영문 자료 제공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관련 기술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인사혁신처에 협조 요청

몽골 부패방지청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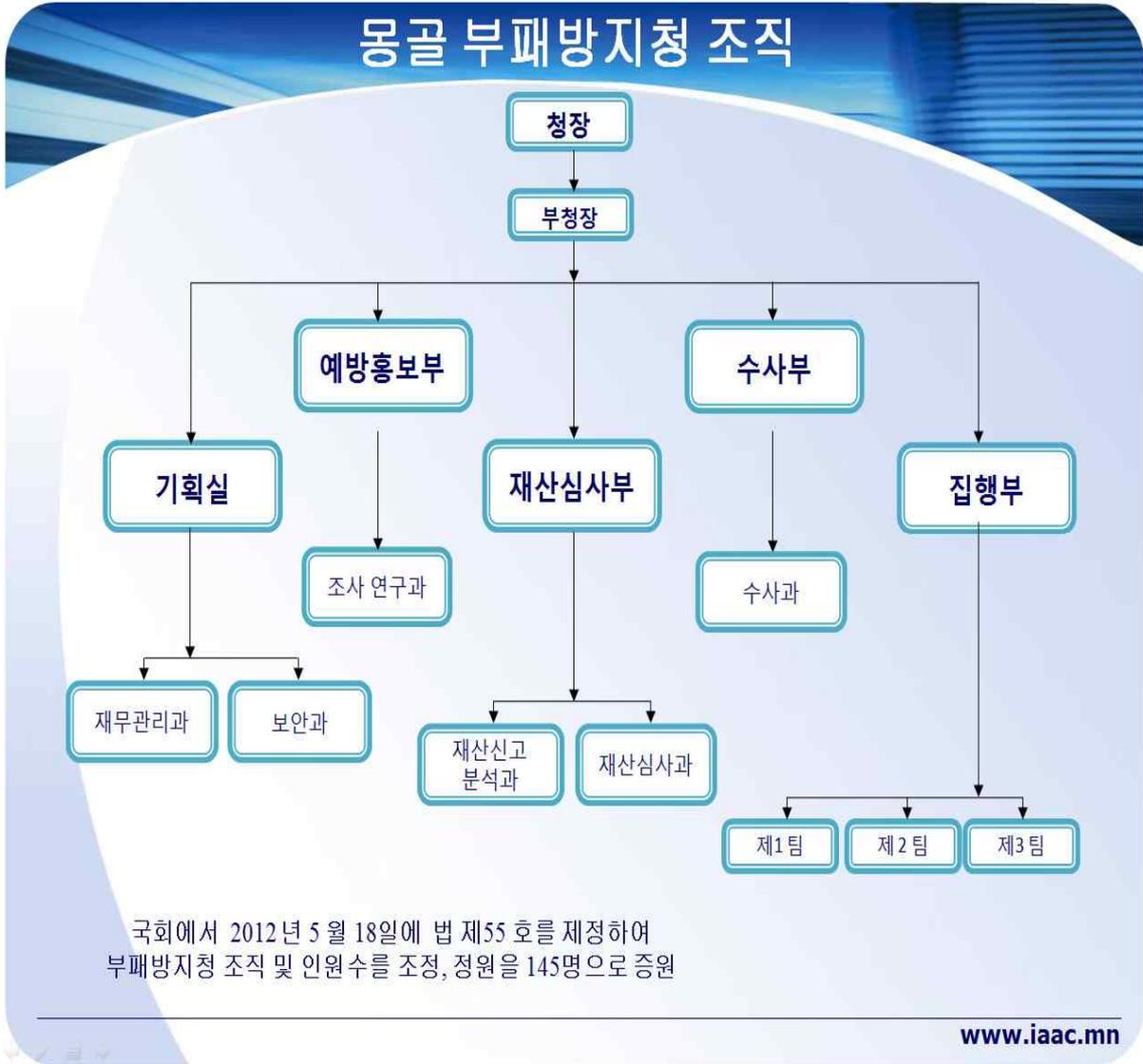
(Independent Authority Against Corruption, IAAC)

- 2006년 7월 8일 몽골은 최초의 부패방지법인 「1996년 부패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개정하고, 동 개정 부패방지법에 의거 2007년 부패방지청 설립
- 부패방지청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9개의 독립기구 중 하나로서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과 함께 몽골 의회 소속임
- 부패방지법에 따라 청장과 부청장은 대통령 추천을 거쳐 의회가 임명하고 임기(6년) 동안 신분이 보장되며 본인의 청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함

※ 현 부패방지청장 : Mr. Dashdavaa Zandraa('19.5.2 임명)

- 부패방지청은 1)부패예방 인식제고 및 교육, 2)부패 예방 조치 이행, 3)부패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정보 수집, 4)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시행 및 5)부패 원인 분석 관련 연구 기능을 수행
- Elbegdorj(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09년 취임 당시 부패척결을 강조, IAAC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였으며, 대중들 역시 부패척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구로 인식
- 모토 : 부패척결과 정의실현을 통한 번영
(To attain prosperity serving justice and combating corruption)
- 구성 : 청장 1명(장관급), 부청장 1명(차관급), 1실, 4부 (department), 6개과(service unit), 3팀, 총 140여 명

<조직도>



□ **추진 배경**

- 몽골 부패방지청(IAAC) 측에서 우리의 부패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을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 ('09.2월)함에 따라,
 -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홍보, 외교적 기반확대,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 선도국으로서의 입지 등을 고려하여 MOU 체결 ('10.2월)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청간 양해각서('10.2.6 체결)

- 이행기간 : 3년
- 목 적 :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통한 부패 예방 및 척결 역량 강화
- 주요 협력 활동
 -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
 -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 제공

□ **추진 현황**

- 협력사업 착수회의 개최('10.6.7, 서울)
 - 제1기('10~'12년) 협력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 청렴도평가('10년), 반부패 경쟁력평가('11년), 부패영향평가('12년)의 순차적 지원에 합의
- 몽골 공무원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 1차('10.6.7~11, 서울) : '청렴도 측정' 주제 워크숍
 - 몽골 부패방지청은 공공부문 청렴도조사를 위해 2009년 자체적으로 지수를 개발, 설문내용의 모호성, 조사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1년 진일보한 평가 실시를 위해 위원회 청렴도평가 제도 학습
 - ※ 몽골 부패방지청 직원 3명 참석

2011년 MOU 이행 일시 중단 및 재개

- 2011년 몽골측 사정으로 MOU 이행 일시 중단
 - 비밀누설, 행정권한 위반으로 청장 등 부패방지청 간부 구속('11.3월), 신임 청장 및 부청장 임명('11.11월)
- 몽골 부패방지청 신임 부청장(Mr. B Khurts) 위원회 방문을 계기로 MOU 재개('11.11월)
 - 2012년 위원회-몽골 부패방지청 간 활발한 협력활동 희망

- 2차('12.8.27~31, 서울)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주제 워크숍
 - '반부패 경쟁력 평가' 제도의 몽골 현지도입을 위해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세부내용, 몽골현지 활용방안 컨설팅, 관계기관 견학 등 실시
 - ※ 몽골 부패방지청 직원 3명 참석
- 3차('14.6.16~18, 서울) : '부패영향평가' 주제 워크숍
 - 한국의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부패영향평가 개관, 한국 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소개 및 몽골 현행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 몽골 부패방지청 직원 8명 참석
- 4차('15.4.13~16, 세종) : '청렴도 측정' 주제 워크숍
 - 청렴도측정 내용 및 방법, 청렴도측정 절차, 점수집계방법 등 청렴도 측정 세부내용 연수 및 실제 조사·분석업체 견학
 - ※ 몽골 부패방지청 직원 5명 참석

○ 몽골 현지 워크숍

- 1차('12.11.13~17, 울란바토르) : 반부패 MOU 협력회의 및 워크숍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평가 시스템, UN 반부패 협약 소개
- 2차('15.11.16~19, 울란바토르) : 반부패 MOU 협력회의 및 ADB/OECD 반부패 조정그룹 회의
 - ADB/OECD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참석 및 청탁금지법·공익 신고자보호법 발표 / 몽골 부패방지청 대상 부패영향평가 소개

- 3차('17.1.10~12, 울란바토르) : 몽골 반부패 컨퍼런스

- 몽골 반부패 컨퍼런스 참석 및 청탁금지법 발표 / 몽골 부패 방지청과 반부패 MOU 이행계획 협의

○ 한-몽골 반부패 협력 MOU 연장 체결('13.1.15, 서울)

- 제1기('10~'12년) MOU 체결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5년까지 MOU를 연장하였으며, 이 후엔 원칙적으로 자동 연장 (MOU 개정사항에 반영)

□ 성과

- '청렴도 평가' 등 우리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 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 청렴도 측정 등 전수한 제도가 몽골의 반부패 역량강화 차원을 넘어 몽골 현지에 도입·정착, 실질적인 반부패 기제로서 작동 중

- 양 기관 간 반부패 프로그램 및 인적자원 교류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한-몽골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

□ 한-몽골 CPI 변동 추이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한국	점수	55	54	53	54	57
	순위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몽골	점수	39	39	38	36	37
	순위	80/175	72/168	87/176	103/180	93/180

**부패의 예방·척결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위원회 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와 몽골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당사자 간 특별한 협력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자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각 당사자의 반부패 역량의 향상 및 능력배양을 위해, 각국의 일반적인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범위

기술지원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정보와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부패 방지를 위한 양자 간 협력 촉진을 독려·기여한다.

제3조 : 연락담당관

1. 효율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본 양해각서와 관련한 당사자 간 직접적 협력을 담당하는 연락담당관은 간부급에서 선정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연락담당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a)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교류담당관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b) 몽골 부패방지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 : 정보의 교환

1. 정보의 교환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양자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요청 사항이 요청 받은 당사자의 국내법이나

기존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 의거 다른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 명시적인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자는 협력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경우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 훈련과 기술지원

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제6조 : 교환 방문

1. 부패예방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상호 간 대표단의 교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실시한다.

2. 부패예방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상호 간 대표단을 교환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 관련 사항은 당사자 간 추후에 논의한다.

제7조 : 이행 체계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활동의 이행에 관해 협의하고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일반 조항

1.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 양해각서는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해당국 내에서 양 당사자에 대한 조직 개편이 있는 때에는 반부패 기능을 승계한 조직이 MOU를 승계한다.

제9조: 효력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1. MOU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2. MOU기간은 3년으로 한다. MOU종료 전에 당사자 상호간 서면 동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MOU를 연장할 수 있다.
3. MOU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후 3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4. 본 MOU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서 MOU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MOU는 종료된다.
5.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 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한다. 개정안은 당사자 간 합의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MOU는 2013년 1월 15일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한국 서울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몽골어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